

- 아 래 -

1) 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상복합용지 EBC-2블록
- 건축개요 : 지하3층 ~ 지상49층, 총 660세대, 아파트 3개동 및 부대시설
- 주택형 : 78㎡, 84㎡A, 84㎡B, 93㎡A, 93㎡B, 93㎡C, 93㎡D

2) 주요일정(예정)

구 분	일 자	비 고
건본주택개관 (입주자모집공고)	2020년 12월 11일(금)	* 건본주택 : 경기 평택시 비전동 1102-2
특별공급접수	2020년 12월 21일(월), 08:00~17:30 (건본주택 10:00~14:00)	* 청약홈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 인터넷 청약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 可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발표	2020년 12월 30일(수)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계 약	2021년 1월 13일(수)~15일(금) (3일간, 10:00~16:00)	* 장 소 : 건본주택 (경기 평택시 비전동 1102-2)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총 43세대 (예비 129세대)

구분		78타입	84A타입	84B타입	소계	비고	
총 공급 세대수		86세대	170세대	169세대	425세대		
기관추천	이주대책 대상자	1(3)	3(9)	3(9)	7(21)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	
	장애인	경기도	1(3)	3(9)	3(9)		7(21)
		인천시	1(3)	2(6)	2(6)		5(15)
		서울시	1(3)	2(6)	2(6)		5(15)
	국가유공자	1(3)	2(6)	2(6)	5(15)		
	장기복무제대군인	1(3)	1(3)	1(3)	3(9)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3)	2(6)	2(6)	5(15)		
	중소기업근로자	1(3)	1(3)	1(3)	3(9)		
	북한이탈주민	1(3)	1(3)	1(3)	3(9)		
	소 계	9(27)	17(51)	17(51)	43(129)		

※ 해당 추천기관은 최대 300% 범위에서 예비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예비입주자 배정수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1.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5)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기관추천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 자격이 주어짐
- 신청 접수는 청약홈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신청가능) 인터넷 접수 마감시간(17:30)이후에는 추가로 접수되지 않음.
- 특별공급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타유형 특별공급으로 전환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견본주택(1811-0133)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평택 고덕신도시 EBC-2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구분	내용
대상자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p> <p>※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 신청일[2020.12.21.(월)]에 인터넷(청약홈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특별공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하며 계약 또한 불가합니다.</u> 이럴 경우 배정되었던 세대는 기타 특별공급 유형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 추첨분으로 배정되거나, 특별공급 청약 미달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 적격 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결과 상기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당첨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접수를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및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로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세대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3. 현장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일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1.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청약자 기준)		내용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서약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 특별공급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발급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해당자	기관장의 추천서	· 해당기관 → 사업주체 추천자 별도 통보할 경우 불필요

- ※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 전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현장 방문 접수는 일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